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54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이성권・안철수・우재준

김기웅・최보윤・김 건

김용태 · 정성국 · 권영진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은 방화는 실화이는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자기 소유 산림이 아닌 타인 소유 산림이나 건물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실화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산림인근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산불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현행 과태료 규정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

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예방으로 산림인근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7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79조).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산림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
- 2. 제18조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대한 홍보
- 3.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불예방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제4항 중 "타인 또는 자신의"를 "타인 소유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⑤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제3항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u><신 설></u>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산림재						
	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산불예방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						
	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						
	2. 제18조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①</u> ~ <u>⑤</u> (생 략)	$\underline{2} \sim \underline{6}$ (현행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불예방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7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실로 인하여 <u>타인 또는</u>	④ <u>타인 소유의</u>						
<u>자신의</u>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							
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u>3년</u>	3년 이하의						

<u>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u> <u>하의 벌금</u>에 처한다.

<신 설>

⑤ (생략)

제79조(과태료) ① · ② (생략)

-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u>30만원</u>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⑤ (생략)

ス]	얼	_	_	_	_	_	_	_	_	_	
0											

- ⑤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 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